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4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사항 공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에서 접수·처리한 고충민원 현황과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사항,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 서대문구의 수용여부 현황 등 옴부즈만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다 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사항

제 1 부 옴부즈만 운영 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도입배경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2.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추진경과

- 2011. 04. 2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1. 05. 11. 시민감사옴부즈만(5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11. 05. 30.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 2011. 06. 0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제1차 정례회의 개최)
- 2011. 06. 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
- 2012. 03. 17. 시민감사옴부즈만 인터넷 민원접수 개시
- 2012. 03. 20. 2011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2. 05. 29.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옴부즈만 운영사례 발표
- 2013. 02. 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 2013. 03. 26. 「2012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3. 05. 29.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4, 신규1)
- 2013. 11. 19. 「시민감사옴부즈만 토론회」개최
- 2014. 03. 19. 「201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5. 03. 26. 「2014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5. 05. 27.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신규1)
- 2016. 04. 28. 「20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6. 05. 01.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17. 03. 29. 「2016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7. 06.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신규2)
- 2017. 11. 30.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워크숍」지방옴부즈만 발전방안 발표
- 2018. 03. 27. 「201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8. 07.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8. 10. 11. 「지방옴부즈만 워크숍」서대문구 운영현황 및 사례발표
- 2019. 02. 27.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 03. 13. 「2018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9. 06.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9. 12. 17. 「서울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서대문구 사례발표
- 2020. 02. 24.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1)
- 2020. 04. 27. 「2019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20. 07.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21. 05. 11.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21. 06. 01.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 2022. 02. 23.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22. 04.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2. 05. 17. 「2021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23. 03. “2022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발간

제2장 서대문구 ombudsman 소개



- 주요경력
변호사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1. ombudsman 자격, 임기, 직무 및 권한

1-1 ombudsman의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2 ombudsman의 임기 및 구성

- ombudsman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지 위	위촉방법	인원(임기)	신 분	주요기능
구청장소속 업무독립 수행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 위촉	5명 이내 (4년)	비 상 임 민간위촉	고충민원 조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1-3 옴부즈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1-4 옴부즈만의 권한

(1) 시정요구 등의 조치요구 권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2) 조사결과 공표 권한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조치의견 유형

· 시정요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 변경, 개선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감사요구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행위
· 권고 및 의견 표명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책 및 제도, 현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2.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2-1 고충민원 조사처리

- (1) 민원인이 방문, 서면, 청렴포털(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 후 다가오는 옴부즈만 정례회의(주1회)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

- (2) 정례회의에서 조사가 결정되면 조사 착수 후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조사가 착수되었음을 통지하고 관계부서에도 조사 실시 통보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 (3) 조사는 1개월 이내 종료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통지
- (4)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에서 조사내용 검토 및 조치의견을 결정 후 민원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관계부서에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 (5)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2-2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1) 관련 부서장은 매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옴부즈만에 제출
- (2) 옴부즈만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감시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활동 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 (3)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감시·평가 대상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후, 대상별 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감시평가 시행
- (4) 감시평가 대상 사업기간 또는 용역 및 구매 기간이 종료되는 매년 말 감시평가 활동결과 검토 및 관계부서에 대한 조치의견을 정례회의에서 결정 후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 (5)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의 공사
- 5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2-3 활동실적 보고 및 공표

- (1)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 (2)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아래의 사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구보에 공표

【옴부즈만 공표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옴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옴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불수용 현황

제 2 부 음 부 조 만 운 영 성 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처리 결과

1-1 민원처리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직접조사								이첩 등 처리				
		계	조치의견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5	3	1	1	-	1	-	-	-	2	-	-	1	1
2012년	72	30	1	2	13	1	1	12	-	42	36	5	1	-
2013년	126	28	-	-	13	5	5	5	-	98	83	10	1	4
2014년	97	20	-	-	9	3	4	4	-	77	65	7	3	2
2015년	65	18	-	1	7	3	1	6	-	47	28	10	5	4
2016년	44	22	-	-	11	7	3	1	-	22	14	2	4	2
2017년	58	25	-	-	16	7	1	1	-	33	28	3	1	1
2018년	51	24	-	-	18	4	1	1	-	27	18	5	-	4
2019년	35	13	1	-	4	4	2	2	-	22	15	2	-	5
2020년	57	8	1	-	2	4	-	2	-	49	44	-	1	4
2021년	36	8	-	-	5	3	-	-	-	28	22	2	1	3
2022년	21	2	-	-	1	2	-	-	-	19	16	3	-	-
2023년	31	2	-	-	-	2	-	-	-	29	17	8	1	3
계	698	203	4	4	99	46	18	34	0	495	386	57	19	33

☞ 직접조사 건수 계(2)와 조치의견별 합계(3)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예: 권고 및 의견표명)

2023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3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0건 증가하였고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은 2건, 이첩민원은 29건으로 주로 구청 해당부서로의 이첩사항이다.

옴부즈만에서 직접 조사한 민원(2건)은 각각 보건위생, 도로관리 분야의 민원이며 주택가 골목길 금연구역 지정 요청, 지하철역 출구 앞 마트의 물건 적치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이다. 옴부즈만 조사는 현장 확인과 민원인 및 관련 직원 면담, 관계 서류 및 법령 검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의견의 유형이 권고, 의견표명,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되어 서대문구청에 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1-2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2011년 (6~12월)	5	4	1	-	-	-	-	-	-	-	-	-	-	-	-
2012년	72	8	-	7	13	7	1	1	10	4	6	2	7	5	1
2013년	126	10	-	18	28	16	9	-	12	7	9	3	11	3	-
2014년	97	11	1	13	22	25	3	1	8	-	13	-	-	-	-
2015년	65	16	4	11	9	13	2	-	7	-	3	-	-	-	-
2016년	44	14	1	5	4	1	4	-	14	-	1	-	-	-	-
2017년	58	20	1	4	13	5	2	-	3	-	5	1	2	1	1
2018년	51	22	-	8	1	3	5	3	2	-	2	2	1	2	-
2019년	35	14	-	4	4	3	1	1	8	-	-	-	-	-	-
2020년	57	23	-	1	3	1	7	3	7	2	4	1	-	5	-
2021년	36	5	-	7	4	5	4	-	7	-	-	2	-	2	-
2022년	21	7	-	1	4	1	-	2	1	-	-	1	1	1	2
2023년	31	6	1	8	4	1	1	2	4	-	2	-	-	1	1
계	698	160	9	87	109	81	39	13	83	13	45	12	22	20	5

분야별 민원 접수현황을 볼 때 2023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전체 31건 중 재개발재건축 분야(8건)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며 그 내용으로는 재개발 조합 업무 문의,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점검 요청 등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건축주택 분야(6건) 민원으로는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내용,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등이 있었다.

1-3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치결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3	3	2	1	-	-	100%
2012년	17	17	17	-	-	-	100%
2013년	18	18	18	-	-	-	100%
2014년	12	12	8	4	-	-	89%
2015년	11	11	11	-	-	-	100%
2016년	18	18	18	-	-	-	100%
2017년	23	23	21	2	-	-	95.6%
2018년	22	22	18	4	-	-	90.9%
2019년	9	9	6	2	1	-	81.4%
2020년	5	5	4	1	-	-	93.3%
2021년	8	8	7	-	-	1	87.5%
2022년	2	2	2	-	-	-	100%
2023년	2	2	2	-	-	-	100%

*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가 일부수용인 건은 조치의견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한 건의 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옴부즈만의 여러 건의 조치의견 중 일부만 조치 이행이 있어 완전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다.

2. 2023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1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총계	창구별 접수 건수			처리 기간(일)		
	청렴포털 (인터넷)	방문	구청장 부의	평균	최대	최소
31	31	0	0	25	2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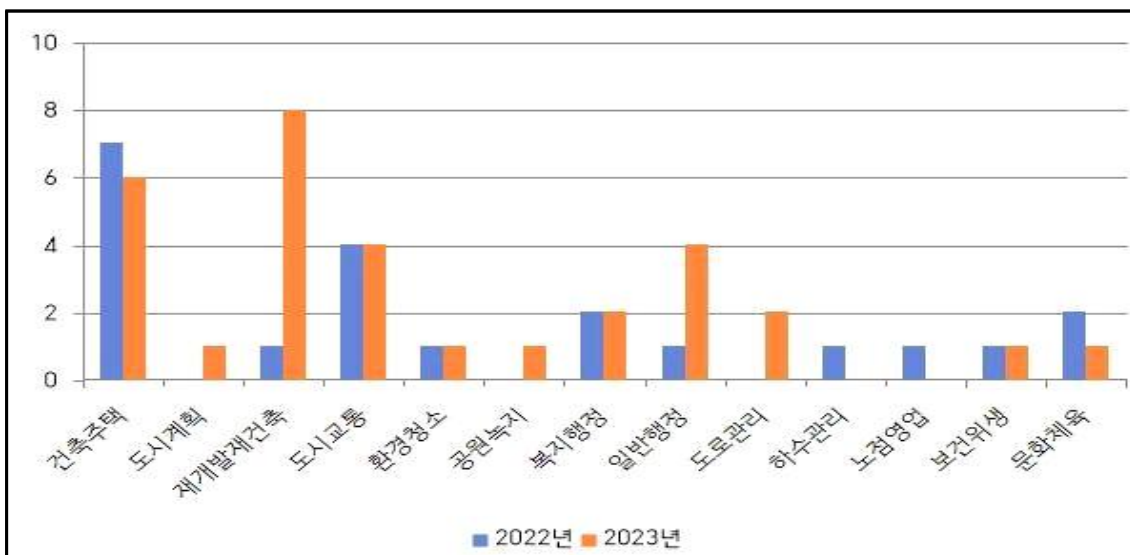
※ 처리기간 계산은 오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에 한함.

2-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접수 건수	직접조사 조치의견								기타					
	계	감사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시정 요구	의견 표명											
31	2	-	-	-	2	-	-	-	29	17	8	1	3	

2-3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접수 건수	고충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31	6	1	8	4	1	1	2	4	-	2	-	-	1	1



2-4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계				의견표명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	2	-	-	2	2	-	-

2-5 고충민원 조사처리 현황

연번	민원요지	읍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p>주택가 골목길 금연구역 지정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골목길에서 흡연하는 자들로 인한 고충 - 인근 편의점 앞에서도 흡연하여 어린이 · 초등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 	<p><의견표명></p> <p>금연구역 지정은 조례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요청한 골목길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p> <p>다만, 민원인의 주장대로 해당 골목과 인근 편의점 앞에서 지나친 흡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를 계도할 필요성이 있음</p> <p>해당구역 골목에 금연구역스티커를 부착하여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편의점에는 업주에게 흡연 관련 주민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 위 장소에서 흡연억제를 유도하기 바람</p>	수용
2	<p>지하철역 출구 앞 마트의 물건 적치로 인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출구 바로 앞 위치한 마트,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상습적으로 구역 밖에 물건, 파라솔 등을 적치하여 불편함 	<p><의견표명></p> <p>상품으로써 마트 앞 도로를 점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음</p> <p>파라솔 윗부분 또한 앞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법에 따라 이를 금지할 수 있는바, 이 내용을 마트에 고지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파라솔을 설치해야 할 것</p>	수용

2-6 기타 민원 처리 현황 (이첩, 취하, 각하, 단순안내)

① 이첩

연번	민원요지	처리 사항	담당부서(기관)
1	동주민센터 직원 불친절(장애인증 발급 업무)	이첩	남가좌1동
2	주정차위반단속 의견제출(이의신청) 불수용에 대한 항의	이첩	주차교통과
3	의류수거함 위치자료 업데이트요청 (공공데이터포털)	이첩	스마트정보과
4	민원응대 성의없음 등 부적정	이첩	문화체육과
5	옆 건물의 공사로 인한 피해 (남가좌동)	이첩	건축과
6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같은 장소 다른 처분)	이첩	주차교통과
7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연장 반대	이첩	신통개발과
8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연장 반대(재민원)	이첩	신통개발과
9	불법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 확인 요청	이첩	주택과, 건축과
10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발생	이첩	주거정비과
11	◎◎아파트 준공지연에 따른 고충	이첩	주거정비과
12	무악재역 인근 불법유턴차량 조치 요청(cctv설치 등)	이첩	교통행정과
13	공무수행차량 관련 불편사항 신고	이첩	신촌동
14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 관련 우편물 발송 시 부탁사항	이첩	도시경관과
15	환경공무원 면접 관련 문의	이첩	청소행정과
16	남가좌동 ◇번지 상가의 인도 물건적치로 인한 불편	이첩	도시경관과
17	무허가 건물 확인 요청	이첩	주택과

② 단순 안내

연번	민원요지	안내사항
1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적격여부 관련 문의	담당자에게 전달, 우선으로 안내 후 종결
2	대현동 공사 소음	소음민원 특성상 빠른 처리가 필요하므로 기후환경과에 민원내용 전달, 조치함
3	□□조합 실태점검 요청	주거정비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다른 민원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내용 접수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부서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 안내
4	△△오피스텔 관리비 부정사용	건축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다른 민 원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내용 접수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부서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 안내
5	파크골프장 이전 설치 반대, 위치에 대한 민원	푸른도시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다른 민원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내용 접수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부서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 안내
6	홍은사거리 내부순환로진입로에 유도선 도색을 추가로 요청함	서대문경찰서와 서부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임을 설명함
7	○○○아파트 준공지연 관련 적극행정 요청	주거정비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다른 민원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내용 접수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부서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 안내
8	☆재개발구역 내 건물의 빗물들이침 피해	위와 같음

③ 취하

연번	민원요지	처리사항
1,2	○○아파트 행위허가 신청(2건)	취하
3	○○아파트 준공지연 관련	

④ 각하(조사제외)

연번	민원요지	각하이유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고발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1-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시 평가 대상					감시 평가 결과					
	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계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특이사항 없음
2011년 (6-12월)	30	11	14	5	-	31	1	2	-	19	9
2012년	22	15	5	1	1	22	-	-	1	12	9
2013년	25	6	11	2	6	25	-	-	6	12	7
2014년	22	8	9	3	2	22	-	-	-	14	8
2015년	17	8	2	3	4	17	1	-	8	6	2
2016년	20	10	4	-	6	20	-	2	10	5	3
2017년	18	10	5	3	(7)	20	1	-	10	6	3
2018년	20	7	2	1	10	22	1	-	9	7	5
2019년	20	6	2	1	11	25	6	-	10	3	6
2020년	24	4	8	2	10	27	2	-	11	3	11
2021년	30	8	8	-	14	36	4	-	11	15	6
2022년	24	7	7	4	6	23	1	-	6	9	7
2023년	4	1	1	-	2	4	-	-	-	4	-
계	276	101	78	25	79	294	17	4	82	115	76

☞ 2023년 감시평가 대상 분류는 3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분류하였다

2023년 청렴계약 감시평가는 3억 원 이상 공사 1건, 5천만 원 이상 용역 1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건으로 총 4건을 실시하였다.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 과정 즉, 입찰, 계약체결, 이행 및 결과 등 전반에 걸쳐 감시평가 활동을 하였다. 사업 발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자격제한에 따른 입찰여부, 업체의 성실한 계

약 이행여부,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준공 후의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시·평가하였다.

2. 2023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옴부즈만 조치의견
1	공사	안산 등산로 정비공사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2	용역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재생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도시관리과	
3	수의 계약	서대문구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기능보완 및 개선 용역	기후환경과	
4	수의 계약	2023년 서대문구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과	